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앙과 영성의 공동체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와 정치적 참여의 과정은 개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단체들에게 때로 어려운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나 기관이 시민 참여와 정치적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한 정치·지지 활동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특정 시점에 씌였습니다. 501(c)(3) 비영리단체의 정치적 연대와 운동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 그 비영리 단체의 지위와 재정 지원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는 시점에 가이드는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가 여러분이 평화 만들기의 긴급성을 인식하며 사역의 방향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때,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동시에 법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면세 종교 공동체와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종교적·영적 공동체, 원주민 공동체, 세속적인 단체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미 수정헌법 제 1 조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유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힘을 북돋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만드는 데 귀중한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해 준 전 National LGBTQ Task Force Action Fund 캠페인 디렉터 Kayla Rivera 와 Alliance for Justice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이 가능한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서의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 주신 샌프란시스코 노회(Presbytery of San Francisco)의 임시 부노회장(Transitional Associate Presbyter) 김성우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가이드는 여러분의 공동체나 기관이 수행하려는 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질문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지원 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의 공동체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식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National LGBTQ Task Force 문의 양식](#)

여러분과 함께 이 운동을 세우고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Tahil Sharma
Faith Work Director
National LGBTQ Task Force



신앙 공동체를 위한 정치 활동 가이드

서론: 신앙 공동체와 국세청(IRS)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복잡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속 민주주의 안에서 정교분리를 인정하지만, 신앙이 법과 정치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는 법안, 연방대법원의 판결, 대통령이 남기는 선례들은 교회와 국가가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신앙 공동체와 성직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어떤 공동체가 “교회(church)”, 공식적인 신앙 공동체, 혹은 신앙 기반 자선 단체로 인정되어 501(c)(3) 면세 단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IRS 는 “교회” 라는 용어를 회당, 모스크, 사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IRS 는 조직이 교회로 간주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특성과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¹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독립된 법적 실체 Distinct legal existence
- 공인된 신조와 예배 형식 Recognized creed and form of worship
- 명확한 교회 행정 체계 Definite and distinct ecclesiastical government
- 공식적인 교리와 규율 체계 Formal code of doctrine and discipline
- 고유한 종교적 역사 Distinct religious history
- 다른 교회나 교단과 중복되지 않는 회원 구조 Membership not associated with any other church or denomination
- 안수받은 성직자 조직 Organization of ordained ministers

¹ Internal Revenue Service | [Publication 1828, Tax Guide for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선출된 성직자 Ordained ministers selected after completing prescribed courses of study
- 자체 문헌 Literature of its own
- 정해진 예배 장소 Established places of worship
- 정기적인 회중 Regular congregations
- 정기적인 예배 Regular religious services
- 어린이를 위한 종교 교육 프로그램 Sunday schools for the religious instruction of the young
- 구성원 양성을 위한 학교 Schools for the preparation of its members

일반적으로 IRS 기준에 따라 “교회”로 인정받는 경우, 연례 Form 990 제출 의무와 같은 일부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 신앙 기반 단체는 Form 990 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 담당자나 법적 신고를 담당했던 사람과 반드시 단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비당파적 활동

연방법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구분합니다. 501(c)(3) 면세 단체는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은 금지되지만,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와 공익 단체들은 특정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이슈”를 위한 활동이라면 입법 영향 활동이나 선거 시즌의 시민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가 정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 “존슨 수정조항(Johnson Amendment)”으로 알려진 이 법은, 501(c)(3) 단체를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정치 캠페인에도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단체(성명 발표나 배포를 포함)”로 정의함으로써, 자선단체와 교회의 정치 선거운동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² 그러나 이 법이 신앙 공동체가 교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러한 활동은 반드시 초당파적(nonpartisan)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² Internal Revenue Service | [Charities, Churches, and Politics](#)

따라서 종교 지도자와 비영리 단체 지도자들은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종교 지도자도 개인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정헌법상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지지가 교회나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종교 지도자는 강단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홍보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 버스나 주보 등 자원을 비당파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도울 수 있다.
- 501(c)(3) 단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비당파적 선거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치 참여 교육 및 훈련 세션 개최
- 공공 이슈에 대한 후보자 교육
- 입법 평가표 발행
- 후보자 설문조사 작성
- 공공 이슈 캠페인 활동
- 후보자 토론회 개최
-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지지 활동을 하는 것(주민발의안(ballot measures)을 포함) (신앙 공동체의 로비 활동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앙 단체를 위한 로비규정(Lobbying Rules for Faith Organizations)”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다른 단체, 입법자,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적정 시세로 종교시설과 주소 목록 대여
- 비당파적 투표 독려(GOTV),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활동
- 투표소 봉사자 모집³

유권자 참여 및 투표 독려(Get Out the Vote, GOTV) 활동은 주(state)와 지역에 따라 규정과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 활동을 계획할 때, 각 지역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활동을

³ Alliance for Justice | [Election Checklist for 501c3 Public Charities](#)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별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Alliance for Justice 의 “Practical Guidance: Nonprofit Voter Assistance Seri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초당파적(nonpartisan) “Souls to the Polls” 활동(다음의 예시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 캠페인 진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Board of Elections) 에서 등록 양식과 안내를 받거나, The National LGBTQ Task Force 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카운티 및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후보에 등록 양식을 삽입하거나 행사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나 행사에는 어떠한 정파적(partisan)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유권자 교육

교회 후보에 투표 정보를 신거나, 후보자 포럼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야 함) 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투표 권리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범죄(felony)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형기를 마친 후 해당 주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조사가 필요함). 또한 청년들에게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투표에 대한 관심을 북돋울 수 있습니다.

- 초당파적 투표 독려 (GOTV) 연합 참여

다른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활동이나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연합에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하는 단체들도 반드시 초당파적이어야 합니다.

원하는 활동이 허용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IRS 가 발표한 Revenue Ruling 의 21 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어떤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Revenue Ruling 2007-41](#)

또한 로스앤젤레스 성공회 교구(Episcopal Diocese of Los Angeles)가 제공한 영어 및 스페인어 유권자 안내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piscopal Diocese of Los Angeles Voter Guides](#)

신앙 단체를 위한 로비 활동 규정

교회는 501(c)(3) 공익 자선단체 규정을 따르지만, 로비 활동 한도를 판단하는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자선단체와 달리, 교회는 501(h) 선택 조항을 통해 로비 한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⁴ 대신 교회는 “비중요한 수준(insubstantial part)”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501(h) 지출 기준이 법제화될 당시 교회들이 종교 자유의 이유로 이를 적용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정 종교 전통과 연결되어 있지만 주된 재정 지원을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받는 신앙 기반 단체들(예: 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Muslim Advocates, Sikh Coalition 등)은 501(h) 지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중요한 수준 (Insubstantial)” 의 로비 활동이란?

“비중요한 수준” 기준은 자선단체 활동 중 “상당 부분 (substantial part)” 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이나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로비 활동은 전체 활동 중 극히 일부여야 합니다.

IRS 는 어느 정도가 “상당한(substantial)” 수준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2 년 연방법원 판례에서는 조직의 시간과 노력의 약 5% 정도를 “비중요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교회가 전체 활동의 약 3~5% 정도까지는 비교적 안전하게 로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교회가 특정 법안을 지지하는 이슈 캠페인 서한(예: DREAM Act 통과 촉구)에 서명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활동은 로비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서한에 서명하는

⁴ 501(h) 선택 조항(501(h) election) 은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가 로비 활동을 수행할 때, 허용되는 로비 활동 범위를 “명확한 지출 기준 (expenditure rules)” 에 따라 계산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교회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이러한 형태의 정책 옹호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중요한 수준 (insubstantial part)” 기준에 따른 로비 한도는 단순히 교회의 지출 금액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IRS 는 교회가 로비 활동에 사용한 재정뿐 아니라, 비용과 관계없이 입법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진 교인 자원봉사자들의 로비 활동 역시 교회의 로비 활동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한 교회가 주정부 예산안에서 아동 건강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제안된 것에 우려를 느끼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교인들과 함께 주 의사당으로 버스 시위를 조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비중요한 수준” 기준 아래에서 교인들이 사용한 시간, 버스 대절 비용, 제공된 식사 비용, 기타 여행 경비, 그리고 이 활동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데 사용된 교회 직원들의 시간 모두가 로비 활동 비용과 노력으로 계산됩니다.

무엇이 로비 활동으로 간주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교회는 로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안을 제안,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입법기관 구성원 (지방, 주, 연방, 심지어 국제기구 포함) 과 접촉하는 경우, 또는
- 특정 법안을 제안,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대중에게 입법기관 구성원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 또는
- 특정 법안의 채택 또는 거부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경우, 또는
- 주민발의안 (ballot initiative) 에 대한 입장을 담아 대중과 소통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로비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특정 법안이 아닌 폭넓은 원칙이나 가치만을 다루는 소통은 로비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을 공정하고 자비롭게 대하자” 와 같은 일반적 원칙과 우선순위를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하거나, 계류 중인 주민발의안이나 법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결혼

평등 (marriage equality) 을 시민권 (civil right) 의 문제로 다루는 공공 교육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로비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교회는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일정한 지침을 따르는 경우 현직 공직자의 공식적인 행동이나 투표 기록에 대해 비판하거나 칭찬할 수 있습니다.

메모용 빈 페이지

계획 세우기 (Make a Plan!)

이 문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주(state), 그리고 그 너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들을 계획하면서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여러분의 활동을 조직하는 목적(purpose), 목표(objective), 그리고 과정(process)은 무엇입니까?

○ 목적 (**What**):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참여시키는 더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 목표 (**Why**):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활동을 통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과정 (**How**): 어떤 행동을, 어떤 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각자의 역할을 통해 실행해야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 여러분의 목표가 SMARTIE 원칙을 충족하도록 하십시오.

즉 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전략적(Strategic)
- 측정 가능(Measurable)
- 도전적(Ambitious)
- 현실적(Realistic)
- 시간 제한이 있는(Time-bound)
- 포용적인(Inclusive)
- 공정한(Equitable)⁵

• 여러분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영향력(power)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 여러분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동맹 (개인이나 단체) 은 누구입니까?

○ 여러분의 계획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아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의 편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⁵ The Management Center | [SMARTIE Goals Worksheet](#)

- 여러분의 공동체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⁶?
-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자원, 협력 파트너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재능과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 “자산 매핑 (asset mapping)” 과정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정부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 여러분은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들과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시나 지역구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접촉 방법일 수 있습니까?
 - 그들의 보좌진(staff)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연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
-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202-393-5177 로 연락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메모용 빈 페이지

⁶ Power Mapping 101 | [Power Mapping 101](#)

Resources

이 가이드에서 제시된 주제들과 활동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지 활동(advocacy)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Alliance for Justice | Election Checklist for Houses of Worship

<https://afj.org/resource/election-checklist-for-houses-of-worship/>

Alliance for Justice | Election Checklist for 501(c)(3) Public Charities: Ensuring Election Year Advocacy Efforts Remain Nonpartisan

<https://afj.org/resource/election-checklist-for-501c3-public-charities-ensuring-election-year-advocacy-efforts-remain-nonpartisan/>

Charities, Churches, and Politics |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newsroom/charities-churches-and-politics>

IRS | Charities, churche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 political campaign intervention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charities-churches-and-educational-organizations-political-campaign-intervention>

Alliance for Justice | Comparison of 501(c)(3) and 501(c)(4) Permissible Activities, featuring a chart that lists various activities

<https://afj.org/resource/comparison-of-501c3-and-501c4-permissible-activities/>

Interfaith America | Faith in Elections Playbook, supports faith-based, civic and campus communities with accessible, actionable ideas on how to support elections

<https://www.interfaithamerica.org/resources/faith-in-elections/>

United Methodist Church - Church and Society | Creating Change Together: A Toolkit for Faithful Civic Engagement

<https://www.umcjustice.org/documents/119>

The Management Center | SMARTIE Goals Worksheet

<https://www.managementcenter.org/resources/smartie-goals-worksheet/>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Power Mapping 101

<https://www.nea.org/professional-excellence/student-engagement/tools-tips/power-mapping-101>

Advancement Project | Participatory Asset Mapping

<https://communityscience.com/wp-content/uploads/2021/04/AssetMappingToolkit.pdf>

Common Cause | Find Your Representative

<https://www.commoncause.org/find-your-representative/addr/>